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73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제73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제출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재)서산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산생활문화센터 (2014. 9. 18. 개관)
- 위 치 : 서산시 호수공원 1로 22, 동방빌딩 6층

- 임차기간 : 2014. 9. ~ 2027. 6. (보증금 450백만원, 월임차료 247천원)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후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시설규모 : 연면적 264㎡
- 근무인원 : 2인(교대근무)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1:00(토·일·공휴일 휴관)
- 위탁시설현황

구 분	면적(㎡)	내 용
6층	264	다목적실 및 무대(70㎡), 동아리연습실 1(24㎡), 동아리방 2(28㎡), 북카페 및 홀(142㎡)

- 누적 방문 인원 현황

기 간	일평균	월평균	누 계	비 고
계			58,143	
2024. 1. 1. ~ 2024. 12. 31.	90	1,800	21,600	
2025. 1. 1. ~ 2025. 12. 31.	100	2,078	24,940	
2026. 1. 1. ~ 2026. 06. 30.	96	1,933	11,603	

○ 재위탁 추진 계획

- 위탁사무 : 서산생활문화센터 재위탁
- 위탁예산 : 금133,573천원

(단위 : 천원)

총 계	인건비	사무운영비	활성화 사업비
133,573천원	79,893	37,680	16,000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공위탁(수의계약)

○ 위탁사무내용

-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Ⅲ. 검토의견

1. 제안목적

○ 본 동의안은 서산생활문화센터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시설과 관리 사무를 재위탁하여 시민의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법적 근거와 대상사무의 적정성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서산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서는 재단이 시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5조에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시설관리 사무 및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등을 위탁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 이용자 안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문화사업 운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로서 위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1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재위탁의 필요성

- 서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 문화예술 사업 및 시설 운영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기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생활문화센터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 적절성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10조 및 제18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유를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

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Ⅲ. 종합검토

가. 본 동의안은 서산생활문화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시설과 관리 사무를 재위탁하여 시민의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지방자치법」「지방출자·출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서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출연기관으로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또한 2019년 6월에 실시한「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

마.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